

양도소득세

생명 손해보험 증여세 과세 ... 상해보험은 비과세

글 | 정태화 세무사

1. 증여세

보험금이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험금은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되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금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험금 수령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보험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증여세 과세 취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보험기간의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서로 다르다면 보험금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 상당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와 같이 보험금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로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그 동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였다. 이 경우에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받은 자금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왔다.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해보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손상된 신체의 복원에 소요된 실비정산성격의 보험금이므로 그 실질이 치료비 등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제5호에 의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상속세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과세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 또는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한다.

(1) 의의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인재·화재·교통사고·질병·사망 등 갖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가 보험이며,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의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이 선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선택의 이익을 받을 권리(他益信託)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증법 제9조 제1항).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선택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선택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 제9조 제2항). 이 때 선택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원본이나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금 수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용어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라는 보험사고가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인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동일하다. 이 때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자기생명의 보험”이라고 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각각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고 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라고 한다.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인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거나 타인이 될 수도 있다. 보험의 수익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에는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법률 또는 약관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

